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~③(생략)</p> <p>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2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</p> 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12.(현행과 같음)</p> <p><a href="#"><u>13. Cp2-E클래스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</a></p>
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2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<b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12.(현행과 같음)</p> <p><a href="#"><u>13. Cp2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a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2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40조(보수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2.(현행과 같음)</p> <p><a href="#"><u>13. Cp2-E클래스 수익증권</u></a></p>

	<p><u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</u>  <u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</u>  <u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  <u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u></p>
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  &lt;신 설&gt;</p> <p>①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<u>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1. <u>A클래스·Ae클래스·C클래스·Ce클래스·W클래스·I클래스·S클래스</u>  <u>가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 <u>나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2. <u>Cp클래스·Cp-E클래스·Cp2클래스·Cp2-F클래스·S-P클래스 : 환매수수료 없음</u></p> <p>③<u>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42조(환매수수료)</b>  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  ①~④(생략)  ⑤<u>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</u></p>	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  ①~④(현행과 같음)  &lt;삭 제&gt;</p>

<p><u>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 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	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7년 7월 28일부</u> <u>터 시행한다.</u></p>